

영등포구의회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17. 6. 21.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47호로 2017년 6월 13일 박정자의원 외 6명으로 부터 제출 되어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 어린이 통학로 등의 교통안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3조)

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및 실태조사

(안 제4조 ~ 안 제5조)

- 라. 어린이 안전교육 및 교통안전지도사 모집·운영 등
(안 제6조 ~ 안 제7조)
- 마. 경찰서, 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협력
체계 구축 및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통제
(안 제8조 ~ 안 제9조)
- 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할 경우
예산지원(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도로법 시행령」 제3조(도로의 부속물)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 「교통안전법」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7. 5. 31. ~ 6. 7.)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를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어린이들이 교육시설에서 집까지 주로 이동하는 “통학로”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시설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11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 안 제3조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설 설치·관리, 통학로 개선사업 등의 시행과 이를 위한 실태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어린이 안전교육 및 교통안전지도사 운용과 교사, 학부모 등에 의한 통학로에서의 교통지도반 운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구간별, 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교통안전지도사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지도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기준하여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12,191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9% 감소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541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5.9%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에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시설개선 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라고 사료됨.

참고로 우리구는 현재 1)어린이보호구역 72개소가 지정되어

1) 초등학교 23개소, 유치원 35개소, 어린이집 14개소 등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음

있으며, 2015년 어린이교통사고는 80건, 이 중 보호구역 내 교통 사고는 2건 발생함.

- 아울러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여 등·하교 어린이 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통학로 상에서 어린이 교통 안전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교통안전지도사 등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 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5.7.24.>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 [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표시하는 뜻은 별표 6과 같다

■ 『도로법 시행령』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2.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3.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용 재료적치장
5.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6.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는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8.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

9. 도로원표(道路元標),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

10. 공동구

11.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

■ 『교통안전법』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7.>

③시·도지사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2.6.1.>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자치부령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8, 2014.7.15, 2014.7.16, 2016.5.2>

1.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한다)

마.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

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 ②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등이나 경찰서장은 관할 구역 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등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